

## 방화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방화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모든 건축물과 전 교직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방화관리자) ①총장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6.)

②총장은 방화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6.)

제 4 조 (방화관리자의 자격) (삭제 2006.10.16)

제 5 조 (방화관리자의 임무) 방화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조개정 2006.10.16.)

제 6 조 (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총장은 각실 또는 시설에 정·부 각 1인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각 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 7 조 (경비근무자의 책임) 경비책임자는 방화관리자 및 화기단속책임자로부터 인수한 단속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지며, 근무 중 화재예방 활동을 위하여 경비를 지휘 감독한다.

(조개정 2006.10.16.)

제 8 조 (공사담당자의 준수사항) 본 대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를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접, 기타의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서를 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작업의 실시 에 있어서는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2.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3.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 모닥불 등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4. 방화관리는 작업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제 9 조 (방화관리자의 연락)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임시로 화기를 사용할 때
2. 건축물 및 각종 설비기구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

제10조 (화기의 사용제한)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할 수 있다.

1. 화재경보 발령시 등의 화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2. 흡연금지 장소의 지정

제11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①총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6.)

②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 1인과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며, 자위소방대에는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개정 2006.10.16.)

제12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조개정 2006.10.16.)

제13조 (일지) 방화관리자는 본 대학교의 소방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방화관리에 따른 서식을 기록 보존한다.

제14조 (위험표시) 위험물 취급장소, 가스시설 및 화기취급소 등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설계도면)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물의 관계설계도면 등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방점검의 실시) ①소방점검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소방점검은 년 1회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조개정 2006.10.16.)

제17조 (소방점검의 결과) 소방점검 실시 후 그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이내에 관할소

방관서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개정 2006.10.16.)

제18조 (불비결함의 정비) 방화관리자는 각종 점검 및 검사결과에 있어 보수사항에 의거, 불비결함 사항에 대하여 개수계획을 수립, 시설의 개수촉진 등에 노력한다.

제19조 (삭제 2003.9.1)

##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계획서의 내용에 따른다.

##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 본 개정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른다.